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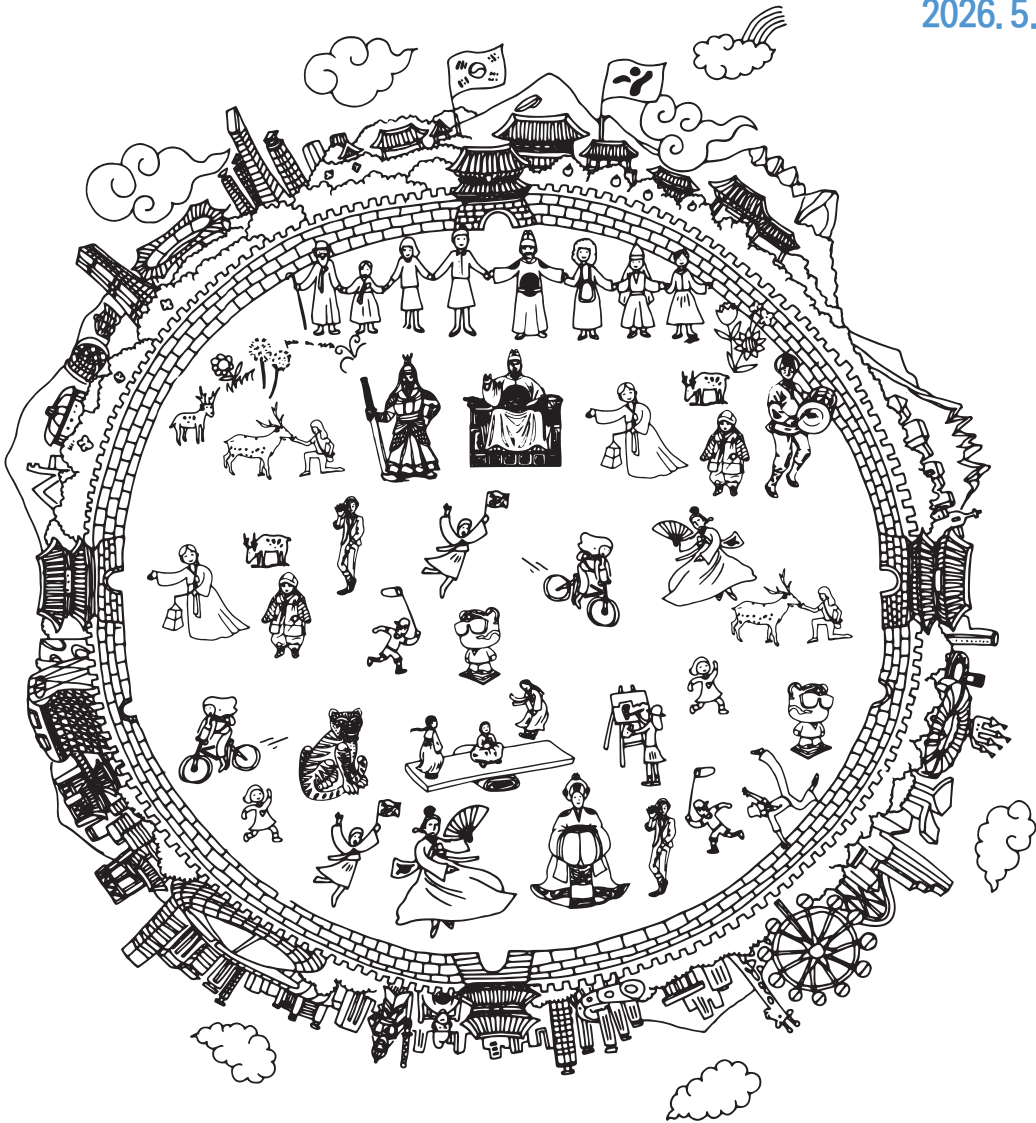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50호(그2)
2026. 5. 21.(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제2026-1615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2

자치법규 등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15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을 위해 사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취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과 편의시설 증진, 환경개선을 위해 서울대공원 내 기존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위치(면적)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일원(25,443㎡)

다. 공사기간 :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

라. 설치규모 : 자동순환식 곤돌라(BTO, 민간 제안)

○ 곤돌라(밀폐형 자동순환식 캐빈형, 노선길이 1,747m, 2개 구간) 신설

○ 곤돌라 정류장 3개소 신설(대형주차장 ~ 동물원 입구 ~ 맹수사)

· 사무실, 매표소, 캐빈 창고, 편익시설

· 근린 생활시설(부속 시설) ※ 전기, 통신, 상·하수도 설비 등 포함

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바. 실시협약(안) 주요 내용

○ 총칙, 기본 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40조)

○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 수익률 및 사용료,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제54조)

○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권리의 처분 및 자금 제조달, 분쟁의 해결 등(안 제55조 ~제82조)

3. 의견 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 서울대공원장,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장로 1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기획홍보과(☎ 02-500-7020, E-mail : natur11@seoul.g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서울소식(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2026. 5

서울특별시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1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2
 제 2 장 기본 약정	13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3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3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4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4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4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14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5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5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5
제 13 조의 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16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7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7
제 15 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17
제 16 조 (자금차입)	18
제 16 조의 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19
제 16 조의 3 (자금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19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9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19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0
제 19 조 (공사비)	21
제 20 조 (공사기간)	21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1
제 22 조 (공정관리)	21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2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2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3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23
제 27 조 (매장유산)	24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24
제 29 조 (지연배상금)	25
제 30 조 (보험가입)	26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26
제 32 조 (기성검사)	27
제 33 조 (민원처리)	27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8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29
제 35 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30
제 35 조의 3 (외자 설비 환율 변동 위험의 처리)	30
제 36 조 (부속사업)	30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등)	31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1
제 39 조 (조기준공)	32
제 40 조 (준공 전 사용인가)	32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32
제 41 조 (운영비용)	33
제 42 조 (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	33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33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34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5
제 45 조의 2 (유지보수비 등의 충당계획)	36
제 45 조의 3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36
제 46 조 (초과수익의 공유)	37

제 47 조 (발전기여금)	37
제 48 조 (경미한 사업)	38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38
제 49 조 (사업수익률)	38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38
제 51 조 (사용료의 징수)	39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0
제 52 조 (행정적 지원)	40
제 53 조 (사업부지의 제공)	40
제 54 조 (수요위험의 처리)	41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1
제 55 조 (위험배분의 원칙)	41
제 5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41
제 57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43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43
제 59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45
제 10 장 협약의 종료	46
제 60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6
제 6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7

제 62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49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0
제 64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1
제 65 조 (매수청구권)	52
제 66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 시 선관의무)	53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53
제 6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3
제 6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3
제 68조의 2(대체자의 선정)	53
제 69 조 (출자지분의 변경)	54
제 70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5
제 71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6
제 71 조의 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 자금재조달 요청)	56
 제 12 장 분쟁의 해결	57
제 72 조 (분쟁의 해결)	57
 제 13 장 기타 사항	57
제 73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57
제 74 조(본 협약 변경 제안 등)	58
제 75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58

제 75 조의 2 (재무보고서)	59
제 75 조의 3 (기록유지)	59
제 75 조의 4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59
제 76 조 (협약의 수익자)	60
제 76 조의 2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60
제 76 조의 3 (일부무효)	60
제 7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60
제 78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60
제 79 조 (통지)	61
제 80 조 (언어)	62
제 81 조 (준거법)	62
제 82 조 (협약의 효력)	62

전 문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주무관청” 이라한다.)과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라 한다)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공원 이용편의 증진 및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울대공원을 보다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서울대공원 내 기존 노후 리프트를 철거하고 곤돌라를 신규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3자 제안공고” 라 한다.)를 2024년 8월 8일(공고일) 수립·공고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24년 11월 29일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 출자예정자 컨소시엄을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규모는 <별표 01>(사업 개요)와 같다.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표 02>(본시설 및 부속시설) 중 부속시설(편의 및 근린생활시설)을 추진하기로 한다.
-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곤돌라 이용자에게 청구하는 사용료]와 부속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월: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을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정해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의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을 말한다.
7.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을 준공할 때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8. 경미한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48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9.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국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곤돌라: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이자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삭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러 대의 탑승기(캐빈)가 케이블에 매달려 있고, 줄의 양 끝에 설치된 바퀴 모양의 기계(활차)가 끊임없이 회전하며 순환하는 운송 수단 및 그에 필요한 지주, 케이블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11. 곤돌라 공급업체: 본 사업을 위하여 곤돌라를 제작 및 공급하는 업체로서, 본 협약 체결시 곤돌라를 제작 및 공급하기로 한 업체를 말한다.
12.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3.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별표 06>(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4. 공사착수일: 본 협약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5.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밖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6.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본 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 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8. 궤도운송법: 대한민국 법률 「궤도운송법」을 말한다.
19. 도시공원법: 대한민국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

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기준사용료 : <별표 09>(이용권 종류별 기준사용료)에 정한 이용권 종류별 기준사용료를 말한다.
22.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 수익률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3.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4.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5. 문화유산 : 대한민국 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26. 매장유산 : 대한민국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7. 매장유산법 : 문화유산 중 대한민국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8.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22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 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별표 18>(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사용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 시 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9.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0. 민간투자법 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3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2.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민간투자법 제44조의3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한다.

33. 민원 : 본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건설기간 및 운영 기간 동안 민원인이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요구하여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이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민자적격성 제조사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8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제검증을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제조사를 말한다.
35. 발굴조사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보존조치로 정밀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로 구성된다.
36. 발전기여금 : 사업시행자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는 별도로 부(負)의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원(금액)을 말한다.
37. 법령 :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8. 법령 등 : 법령 및 정부와 주무관청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9. 법정 정산 경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각종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제6항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비,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등 해당 법률에서 경비의 정산규정을 두는 경비를 말한다.
40. 보건 및 안전 규정: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보건, 안전에 관한 법률, 규칙, 기준을 말한다.
41. 본 사업 :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42.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43. 본 사업수입 : 본 사업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사용료수입, 부속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을 말한다.
44. 본 사업시설 : 본 사업에 따른 본시설과 부속시설을 통칭한다.
45. 본시설 : 곤돌라 등 본 사업을 위한 궤도(삭도)시설을 말하며, 그 세부시설은 <별표 02>(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기재된 본시설의 범위와 같다.
46. 본 협약: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47. 부속사업: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48. 부속사업 수입: 사업시행자가 부속시설의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49. 부속시설: 판매시설 및 편익시설 등 본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세부 시설은 <별표 02>(본시설 및 부속시설)에 기재된 부속시설의 범위와 같다.
50. 분기: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51. 불가항력 사유: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본 협약 제58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52. 사업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3. 사업수익률: 본 협약 제49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 실질수익률을 말한다.
54.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55.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56. 사업이행보증: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57. 사업제안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 11월 18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58. 사용료: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법상의 사용료(부가가치세 제외)를 말한다.

59. 사용료수입 : 본시설을 운영함에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60.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를 말한다.
61.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62. 소비자물가지수: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63.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2022년 9월 3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64. 수요예측 재조사: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7조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수요예측의 재조사를 말한다.
65.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66. 시굴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라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를 말한다.
6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68. 실시계획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69. 실시설계 :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조제9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1호, 2021.7.23.)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70.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71.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72.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73. 운영비용 : 본 협약 <별표 10>(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의 운영비 내역 항목으로 구분한 비용들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74. 운영설비 :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에 공여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부속시킨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75. 운영수입 : 사업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 수입을 총칭하여 말한다.
76. 운영연도 :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77. 원화 : 해당 시점의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를 말한다.
78.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같은 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79.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80. 인·허가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그밖의 관계기관이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81. 일 또는 날 :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82.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83. 자금재조달(Refinancing): 실시협약(변경실시협약 포함)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4. 자금제조달 이익공유 : 사업시행자가 자금제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대이익 증가분을 주무관청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85. 자금제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이 공표하는 자금제조달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86. 자금조달 : 사업시행자가 본사업에 필요한 민간투자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자자로부터의 자본금 출자와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포함한다.
87.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88.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자금 중 자본금으로 조달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등과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89. 자본금: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자본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90. 재무모델: <별표 18>(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변경한 재무모델을 포함한다.
91. 전문기관: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에 의해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92. 정밀발굴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라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또는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전체에 대하여 매장유산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발굴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굴조사를 말한다.
93. 제3자 제안공고 : 서울특별시가 2024년 8월 8일(공고일) 제안 공고한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94. 제반공급 :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95.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96.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97.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연장 또는 단축) 시 그 변경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98.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99. 준공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00. 준공확인필증: 본 협약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101. 지방계약법: 대한민국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02. 지방계약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한다.
103. 지식재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이용권한을 부여받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라이선스 및 기타 모든 지식재산을 의미한다.
104. 지장물: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105. 지표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매장유산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106. 착공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107. 채권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108.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별표 06>(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109.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110.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 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별표 06>(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111. 최초 사용료: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사용료를 말한다.
112. 추정 사용료수입: <별표 08>(추정 운영수입(불변))에 명시된 특정 운영연도 사용료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113. 출자에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14. 출자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69조(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15. 출자지분: 사업시행자에 대한 각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말한다. 단, 제 114호에 따른 출자에정자 지위에서는 출자에정지분이라고 한다.
116. 표본조사: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또는 시굴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설공사 지역 중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유산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7. 하도급 법령: 대한민국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118. 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119. 협약당사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에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 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으로 해석한다.
- ⑤ “등” 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를 의미하며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 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표가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별표를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 ⑨ 본 협약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 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 ⑩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에 의한 확인,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본 협약에 따른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 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 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제3자 제안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자 제안 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민간투자법」과 「도시공원법」, 「궤도

운송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포함한 각종 제반 법령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 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 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운영설비의 경우 그 취득일자로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식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 할 수 있고, 본 협약 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 이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

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 06>(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와 같이 2022년 9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백만원이며,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시 확정된 총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법령,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인·허가 기관의 요구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결과, 그밖의 민원의 처리 방안으로서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5.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이 증감되는 경우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한시적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적용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에 이르러 부가가치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7. 본 사업시설의 준공시점에 이르러 취득세율이 본 협약 체결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경감율 50%)과 달리 적용됨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8. 공사범위 변경 등 그 밖의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9. 본 협약 제35조의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규정에 따라 경비를 정산하는 경우
- ② 협약체결 시 확정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건설사업관리자와의 실제 건설사업관리계약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 금액이 더 낮아 건설사

업관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 ③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내용·성능·규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를 포함. 이하 ‘신규비목’이라 함)은 신규비목에 대한 설계가를 산출한 후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가와 동 설계가에 실시협약상 공사비의 설계가 대비 적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④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 ⑤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검증 관련기관에게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공사비의 적정성 및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본조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사용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사용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⑦ 협약 당사자는 본 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 사유로 합의하는 경우 본 협약 제73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 따라 재무모델에 반영한다.

제 13 조의 2 (총사업비의 변경 등과 민자적격성 확보)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본 사업의 당초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 ①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본 협약과 재무모델에서 제시한 자금조달 조건을 최대한 준수하여 실시계획 승인의 신청시까지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자금 조달과 관련된 출자약정서 및 자금차입계약서 등 자금조달 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 15 조 (자본금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이상을 자본금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고려하여 자금조달 계획을 변경하도록 한다.
- ③ 본 협약 체결 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본금의 투입일정은 <별표 0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3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 이상이 자본금 납입이 완료 되어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본금 비율을 최소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금차입)

- ①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자금차입 계약이 본 협약과 재무

모델에서 정한 자금차입 조건과 비교하여 차입금액, 차입금리, 원리금 상환기간 또는 부채상환금 적립조건 등에 현저한 변경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거나 별도로 주무관청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선순위채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을 출자자와 체결하는 경우, 차입금리는 출자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경쟁을 통하여 조달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출자자로부터 선순위채를 조달하고자 한다면 선순위채 중 출자자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이내로 하도록 노력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또는 승인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경우 후순위채에 대한 상세 조달 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자금제조달 이익 공유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관청이 후순위채 조달계획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조정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 ④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가 조달사유, 자금차입의 규모 및 조달조건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본 협약 제73조(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자금제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 등과 대출약정 시 아래 각호의 조건을 대출약정서에 포함하여 채권금융기관 등과 약정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차주)는 자신의 요구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받은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기한 전 상환 수수료는 본 사업의 특성, 시장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후순위채의 조달금리 및 규모를 합리적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본 협약과 달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또는 금융약정 변경 시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주무관청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약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 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약정 체결 전 주무관청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 16 조의 2 (자금차입 금액의 투입)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한 자금 차입 금액을 <별표 0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제 16 조의 3 (자금차입 계약 시의 담보 설정)

- ①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제안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 부록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제안서는 본 협약 체결 시 실시설계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

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소요자원 확보 대책 및 자금차입계약서 사본 포함)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해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및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공사비를 초과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 내용(첨부서류 및 도면 포함)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사항을 적시하여 주무관청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한다. 다만, 민간투자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별표 06>(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2년 9월 30

일 불변가격 기준 금 [**,***]백만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수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를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 말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연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공정관리시스템은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 PMIS)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 곤돌라의 제작 및 공급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 곤돌라 설비공급업체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 곤돌라의 제작 및 공급의 수행을 위한 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각 계약의 체결 후 즉시 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상대방(설계자, 수급인, 곤돌라 설비공급업체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 제안서에 제시된 상대방(설계자, 수급인, 곤돌라 설비공급업체 등)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을 체결할 또는 체결한 상대방(설계자, 수급인, 곤돌라 설비공급업체 등)이 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련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이행지체 내지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계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 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 시에는 예외로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대금지급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

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7 조 (매장유산)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매장유산법 등 관계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매장유산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또는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우선 부담한 후 본 협약 제35조의2(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고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 ③ 매장유산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총사업비에 사업시행자 지정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 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및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

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사업이행 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연배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준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제1항의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본 협약 제32조(기성검사) 및 제 35조 4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확인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별표 15>(보험내역)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

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시설물의 운영개시 이후 본 사업시설의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본 사업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사항
2. 본 사업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및 조치사항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쌍방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② 협약 당사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상대방에 민원의 발생 사실과 발생 원인 등을 서면 통보한다.
- ③ 협약 당사자는 제2항의 서면 통보를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민원의 처리 방법, 처리 비용 등에 대해 협의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사전 협의한 내용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 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 시, 민원의 발생 원인과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민원의 처리 책임 주체와 민원처리 비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1.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설계, 시공,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2. 본 실시협약에서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민원 처리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는 분담비용을 협의하여 민원 처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가. 민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여 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민원이 제1호의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다. 민원이 제2호의 주무관청의 의무 또는 책임 사항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나, 주무관청의 법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 ⑤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를 제외하고, 본 조에서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하는 민원처리 비용 중 협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 항목으로 추가 반영하기로 한 경우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4호에 따라 추가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자본금 및 차입금의 추가 자금조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 ⑥ 본 조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민원처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처리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궤도운송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건설사업관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감독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대가는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급하도록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를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실시체계, 설계 및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사업관리 업무현황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협약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7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8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시, 이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른다.

제 35 조의 2 (법정 정산 경비 등의 정산)

- ① 법정 정산 경비는 정산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정산 경비의 개별 항목별 증감을 반영한 정산 경비 총액은 본 협약상 정산 경비 총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법정 정산 경비, 본 협약 제27조(매장유산) 제3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및 제13조(총사업비 변경)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비 차액 정산등 정산 경비 정산이 발생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정산 경비 조정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의 3 (외자 설비 환율 변동 위험의 처리)

- ① 본 사업의 사업기간 중 외화(EUR)로 조달되는 곤돌라 운영설비(캐빈, 지주 등 수입품에 한함)의 수입대금은 기준환율(1,408.83원/EUR) 기반의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집행 시점의 환율 변동은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
1. 실제 집행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여 준공시 총사업비에 감액 반영하여 정산한다.
 2. 실제 집행 시점의 환율 변동이 당시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의 **%는 제46조(초과수익의 공유) 및 제47조(발전기여금)에서 정한 방법으로 주무관청이 분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제 환율 및 수입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수입업체와의 최종 수입 계약서, 외화 송금 영수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외자 설비 환율 변동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 36 조 (부속사업)

-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편익 및 판매시설 등의 시설규모 및 범위는 <별표 02>(본시설 및 부속시설) 중 부속시설과 같다.
- ② 제1항의 부속사업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하에 시행토록 한다.
- ③ 제1항의 부속사업에 필요한 공사비 등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④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 입점업체들(전차인 포함)이 납부한 임대보증금(또는 전대보증금)이 임대기간(또는 전대기간) 만료 시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별도 계좌 관리, 보증보험 등)을 마련하기로 한다.

제 37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6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8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의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 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 39 조 (조기 준공)

- ①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당초 준공예정일까지의 무상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주무관청은 조기 준공의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시점을 앞당기거나(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이 앞당겨진 만큼 종료시점 역시 앞당겨짐.) 조기 준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본 사업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기 준공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사용료 징수,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0 조 (준공 전 사용인가)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38조(준공 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38조(준공 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 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준공 전 사용인가에 따라 운영하는 기간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수입 및 비용의 처리는 협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1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22년 9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백만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별표 11>(연간 운영비용)과 같다.
- ②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현저히 증감하는 경우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등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이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3.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별표 10>(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용 내역)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 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 여부를 고려한다.
- ④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비를 변경하기로 하는 경우,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의한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운영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2 조 (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 ①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이 최대한 도모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 회사(이하 “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2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수입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입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 등으로 집계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년 4월 말일까지 직전 사업 연도의 운영실적(이용현황 포함)과 이에 따른 수입, 손익현황,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게 서면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일 때에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회계보고서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2항의 운영 실적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이용객 현황 및 사용료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된 전문성이 있는 제3의 독립

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운영실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열람 복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운영개시일 3개월 전까지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설 관리자 및 종업원의 임무배치,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재해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최종 운영관리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운영개시일 전 원활한 사업 진행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 측에 해당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는 「궤도운송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

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사업시설의 대수선을 <별표 16>(대수선 및 유지보수 계획)상의 대수선 대상 물건의 명세, 교체시기 및 교체횟수, 대수선 비용에 따라 시행한다.
- 단, 본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16>(대수선 및 유지보수 계획)과 달리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 하에 대수선을 시행한다.
- ⑧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는 본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능개선 및 시설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5 조의 2 (유지보수비 등의 충당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비를 <별표 16>(대수선 및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45조 제7항에 따른 대수선 및 제 1항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유지보수비 및 대수선비에 대하여 회계상 별도의 관리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만료 시 본 협약 제60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지보수비용을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 45 조의 3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 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월의 비용, 수입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월의 15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3항의 운영실적이 정확한지 여부

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
- ⑥ 부속시설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이 <별표 08>(추정 운영수입(불변))에 제시된 부속사업 순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⑦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운영순이익이 <별표 08>(추정 운영수입(불변))에 제시된 부속사업 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본 협약 제46조(초과수익의 공유) 제1항에 규정된 비율로 분배하여 수익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 위탁하는 등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관리운영권이 존속하는 기간의 범위에서만 부속시설을 임대할 수 있음을 제3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속시설의 임대등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사업시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한다.

제 46 조 (초과수익의 공유)

-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료수입과 부속사업 순이익의 실제 합계액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을 주무관청과 50:50으로 공유한다.
- ② 초과수익의 산정 및 공유기준, 적립 시기와 방법, 사용용도 등은 <별표 13>과 같다.

제 47 조 (발전기여금)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백만원(2022년 9월 30일 불변가격기준)의 발전기여금을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시설 관련 어느 연도의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 순이익의 실제 합계액이 <별표 08>(추정 운영수입(불변))에 따른 사용료 수입과 부속사업 순이익 합계액의 **%에 미달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자금현황 및 발전기여금 상환계획등을 확인하여 발전기여금을 유예 또는 면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기여금의 지급 및 적립 시기, 방법 및 사용용도 등은 <별표 14>와 같다.

제 48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합의하여 정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제 49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세후 **%)로 하고, 본 협약 종료 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 제42조(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 및 제71조(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 ① 본 사업의 기준사용료는 <별표 09>(이용권 종류별 기준사용료)에 정한 바와 같고, 본 협약에서 사용되는 본 사업시설의 추정사용료 수입은 <별표 08>(추정 운영수입(불변))에 제시된 2022년 9월 30일 불변가격기준의 추정사용료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최초사용료의 결정을 위하여 기준사용료에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개시일 전월까지의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최초사용료(안)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사용료를 병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운영개시일 전 6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운영개시일 전 3개월 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사용료
 - 사용료 : 곤돌라의 이용요금(탑승요금)
 - 부속시설 사용료 :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 등
 2. 사용료산출 기초자료

3. 사용료 징수 방법
 4. 유사시설의 사용료 수준 등
 5. 사용료 할인 계획
 6. 기타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최초 사용료를 제외한 운영기간 중 사용료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7월 1일을 기준(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으로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조정할 사용료를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조정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3월말까지의 물가를 반영하여 해당연도 4월 15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100원단위로 최종적인 사용료를 결정한다.
- ⑤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그밖의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사용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사용료의 적절한 조정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제3의 전문성이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사용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 결과를 따르도록 한다.

제 51 조 (사용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곤돌라의 탑승요금 및 부속시설의 임대료 등)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② 본 협약 제40조(준공 전 사용인가)에 의한 사용기간 동안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2 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기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고 주무관청이 추진한다.
- ② 곤돌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과 관련 심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가 별도 추진하

되,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및 심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53 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부지의 사용 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 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 및 테마가든 운영, 운송수단인 코끼리열차 운행 및 주차장 운영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본 사업부지의 제공시

점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⑦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 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 54 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사업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사업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5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 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6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부실시공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하거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신청 등이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6.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7.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유지관리 및 운영을 중단한 경우
 9.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16조(자금차입), 제69조(출자지분의 변경), 제70조(자금제조달의 절차) 또는 제67조(양도 및 담보의 제공) 등 본 협약에서 정한 출자자 변경, 자금 조달 및 자금 제조달에 관한 사항 또는 양도 및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10.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71조의2(자금제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제조달 요청)에 따른 자금제조달 여건보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제조달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자금 제조달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11. 사업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등 모두 포함) 동안 본 사업시설(부속시설 포함)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12. 본 사업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탑승객의 승하차, 운행정지, 긴급제동 시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등 포함)과 강우·강풍 등 재난관리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고, 본 사업시설 중 구조물에 대한 「궤도운송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예산 편성 등 포함)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이행 지체 내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 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7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 의무에 대한 행정 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공사기간 중 총사업비 증가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운영비 증가분)을 배상하도록 한다.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 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유로서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공사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해당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업시행자는 공사 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 기간 연장을 주무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의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운영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복구 등과 관련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위협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위험으로 인한 경우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90%를 부담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당 불가항력사유의 처리기간 만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정부의 요구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주무관청이 이를 보상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제3항과 제4항의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 ⑥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59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0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 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6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이하 “공동시설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공동시설점검 결과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수리 또는 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위한 조직 및 관리체계, 관련규정,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의 운영, 유지관리, 보수 등과 관련된 각종 Data, 예비설비 및 부품, 운영 중 사고 및 조치결과, 시설물 및 관리체계 개선사항 등)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조건없이 무상으로 인계한다.
 3.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7>(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위임한 민간 운영자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 및 취득한 경험(노하우)을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61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1호의 사유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2호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29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5호의 재원조달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6.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6호의 공사착수 지연이 3개월 이상이 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7호의 사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유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본 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8.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8호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거부 또는 중단이 3개월 이상인 경우
9. 본 협약 제56조(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9호의 자금조달 및 자금 재조달 또는 양도 및 담보 제공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의 반복적인 위반이 있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제1호, 제2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 등 주무관청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1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 민자적격성 재조사 등으로 시행한 타당성 분석 결과, 타당성 판단 단계에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무관청 또한 본 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

려운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착공 이전에 수요예측 재조사 또는 적격성 재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건설기간 중 비정기적 불가항력 사유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5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57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 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유산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 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본 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 ⑤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68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2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본 협약 제6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해지 시점까지 자기 부담으로 이를 수리·보수 또는 보강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주무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 17>(관리운영권의 인계)와 같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및 조건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 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인계)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와 점검을 수행(점검 비용은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하되, 불가항력의 경우 50:50으로 한다)하고, 그 결과 본 사업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단, 본 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상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시점 이후에 수리 또는 보수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수리 또는 보수 범위에서 제외하되, 운영개시일로부터 협약해지일까지의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 18>(해지시지급금 산정)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이 경우, 기투자민간투자자금은 실제 기투자 민간투자금을 기본으로 하되, 실시협약상 당사자가 합의한 민간투자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성이 있고,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조항에서 “독립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독립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독립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

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독립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지의 효력발생일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4. 본 협약 제62조(협약해지시의 효과) 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대수선 비용 중 사업시행자가 미부담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5. 본 협약 제29조(지연배상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6. 해지일 기준 발전기여금 유예금액 또는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 할 초과이익 공유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해지시 지급금에서 공제한다.
 7. 부속시설 임대보증금 중 사업시행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못하여 주무관청이 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

제 64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해지시 제63조(해지시 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

금 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시기에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하기로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 등 본 사업 관련 주무관청이 요구한 일체의 설비나 권리 등을 이전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해지시지급금은 주무관청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사업시행자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 ④ 협약당사자는 해지시지급금 시기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5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한 경우
 -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본시설의 운영이 전면 중단되거나 본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한 경우
 - 3.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

금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66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 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제조달

제 67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식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부지 제외). 다만, 본 협약상의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68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8 조의 2 (대체자의 선정)

- ① 본 협약 제61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 발생을 통지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주무관청은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채권 금융기관등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조달 및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대체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 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 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 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 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한다.

제 69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별표 03>(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중 **%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 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을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0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 추진시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자금재조달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본 협약 제71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해당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의 비율은 **:**으로 하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제45조(감독·명령)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 자금재조달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후 출자자변경 약정 또는 자금차입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주무관청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⑧ 주무관청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실시협약과 그 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자금재조달 이익의 재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변경 실시협약에 반영한다.

제 71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30:70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기대이익 증가분을 말한다. 기대이익 증가분은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로 인한 이익(본 협약 체결 이후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하락으로 발생한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의 기대이익 증가분)과 출자자 기대수익률 증가이익(조기 배당효과와 타인자본의 조달 조건 변경 효과로 인하여 출자자의 경상투자 수익률이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으로 구성된다.
-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자금재조달의 범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의 요건, 공유비율, 이익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점, 이익의 사용처 및 사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제3자제안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 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71 조의 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 자금재조달 요청)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매년 4월 말일까지 주무관청에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자금차입계약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라 보고하도록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 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도록 한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2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다만 분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
- ②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3 조 (변경 실시협약의 체결과 재무모델의 반영)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② 본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실시협약 및 재무모델을 변경하도록 한다.
 1.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41조(운영비용) 제2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운영비용의 현저한 증감을 이유로 사용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여 운영비 변경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3. 본 협약 제42조(법인세법 변경 시 처리)에 따라 법인세율 변경 등 조세 관련 법령 등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경우
 4. 본 협약 제58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 착수시기 연기, 공사기간의 연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연장 등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경우

5. 본 협약 제70조(자금제조달의 절차) 제4항 및 제71조(자금제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 따라 자금제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들을 반영하는 경우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의 재무모델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 변경의 조건, 변경 효과 등을 산출하는 근거와 함께 변경 재무모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한 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주무관청이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무모델을 검토하여 동의하는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정하여 제출한 변경 재무모델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변경 재무모델을 첨부하여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 ⑥ 주무관청은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법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민자적격성 재조사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한다.

제 74 조 (본 협약 변경 제안 등)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 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5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사전승인 없이 집행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안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5 조의 2 (재무보고서)

-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재무제표 승인 후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주무관청에게 선임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75 조의 3 (기록유지)

-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및 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5 조의 4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금융기관을 주간사로 하는 채권금융기관등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등이 근저당권, 본 협약상 지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등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채권금융기관등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76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6 조의 2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76 조의 3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78 조 (정보공개 및 비밀유지)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의 내용을 민간투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본 협약의 공개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민감한 정보를 삭제한 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중 누구도 다음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 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6.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령과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또는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 시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④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⑤ 제4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79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 종합관리사무소 기획홍보과
 수신 : 서울대공원 곤돌라 민간투자사업 담당
 전화 : 02-500-7020~7033 팩스 : 02-500-7019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전화 : 팩스 :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당해 주소지에 도달 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0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서면)교환은 한국어(한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한글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본이 해석상 우선한다.

제 8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2 조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한 사업시행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

(가칭) 서울대공원 케이블카 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인)

대표이사

(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